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03
----------	------

2014년 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청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4년 2월 19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2014년까지 서울의 에너지소비량을 200만 TOE(티오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유휴부지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여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학교는 태양광발전의 잠재력은 풍부하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가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개 요

- 사 업 명 :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 사업대상 : 서울시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 사업내용 : 기후변화기금 운용을 통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 규 모 : 학교 태양광 발전소 3개소(약 200kW)

2)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3년(추후 재계약)
- 수탁기관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위탁업무
 - 태양광발전사업 기획(부지발굴, 적합성 검토, 경제성 평가 등)
 - 교육청, 학교 등 관련기관 협의
 -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전력판매, 시설유지관리)
 - 수익금 및 지출금 관리 등 기후변화기금 일부 운용
- 소요예산안 : 총 600,000천원(2014년)

3)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2013년의 경우 2011년 연평균 허가건수와 비교하여,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10배 이상 증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 그러나 학교 등 설치가 용이하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일부 공공부지의 경우, 높은 대부료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서울시가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다만, 실제 사업수행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공공시설의 운용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안석수)

가. 개요

- 동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후변화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용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안배경

- 학교건물은 옥상의 구조가 단순하고 남향으로 일조량이 높아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유리하고,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으로 활용가능하며, 옥상의 임대를 통해 교육재정의 확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학교에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 건물보다 비싼 대부료¹⁾ 및 학교시설관리가 어려워진다는 학교측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지역학교현황	: 1,340개교(국공립 962, 사립 378)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학교	: 155개소 5,178kW(전체 학교의 12%)
- 설치의무화 및 일반보급	: 136개소 3,900kW(평균 28.7kW)
- 발전사업허가	: 19개소 1,287kW(평균 67.7kW)

1)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에너지조례」에 따라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때 대부료는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25,000원/kW.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대부료가 큰 차이가 날 수 있음

- 이에 서울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학교에 기후 변화기금을 활용하여 학교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다. 검토의견

- 서울지역의 2013년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인허가건수는 2011년 이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100건에 이르고 있는 등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표 1. 서울시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건수

연 도	2008 이전	2009	2010	2011	2012	2013
허가건수	10	6	9	6	29	100

- 서울시는 민간태양광 발전소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를 개정하여 사용료 및 대부요율을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민간태양광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태양광발전시설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태양광발전소 대부요율 : 25,000원/kW·년
·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사업 :
소규모(50kW 이하, 학교는 100kW이하)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보조금(50원/kW)

-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건물 옥상에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건물에 비해 비싼 대부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표 2. 서울시 공공건물 옥상과 학교옥상의 태양광발전시설 대부료 비교

구 분	시설용량(kW)	설치면적(㎡)	대부료(원/년)	비고
서울시 공공건물	20	200	500,000	
학 교	20	200	2,720,000	○○○ 고등학교

-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학교에 대하여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되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발생하는 수익금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 한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정체성과 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참고자료] 관련 법규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④ (생략)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일부에 대한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⑥ (생략)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조제목 변경 2009.07.30)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09.07.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개정2012.12.31.>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9. (생략)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12.7.30, 개정 2013.5.16.)

제25조의2(의견청취) 시장은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6. (생략)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경우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03
----------	------

제출년월일 : 2014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2014년까지 서울의 에너지소비량을 200만 TOE(티오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유휴부지 활용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여 적극 추진 중임.
- 나. 다만 공공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등 태양광 발전의 잠재력은 풍부하나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시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위탁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학교 등 공공시설에 수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 사업내용 : 기후변화기금 운용을 통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 및 운영
- 사업규모 : 3개 사업장(2014)에서 발전사업 수행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3년(추후 재계약)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위탁방법 : 수의협약
- 위탁업무
 - 부지발굴, 적합성 검토, 경제성평가 등 태양광 발전사업 기획
 - 학교 등 재산관리관,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의
 - 설계도서 작성, 허가서류 작성 등 인허가 진행
 - 사업발주 및 감독, 준공검사 등 사업시행
 -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및 SMP(계통한계가격) 전력 판매, 시설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사업 운영
 - 수익금 및 지출금 관리, 기후변화 기금 운용 등 행정업무 수행
 - 기타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수행
- 소요예산(안) : 총 600,000천원 (2014년), 발전사업 3개소 수행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지역 태양광발전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2013년의 경우 2011년 연평균 허가건수와 비교하여, 발전사업 허가건수가 10배 이상 증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음.
- 그러나 학교 등 설치가 용이하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일부 공공부지의 경우,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다만, 사업 수행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공공시설의 운용관련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민간위탁 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3.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일부에 대한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대행사업)
 -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나. 예산조치 : '14년 기금으로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김소연(2133-3569)